

# Korean Tax Update

August 2021, Issue 86

## [조세뉴스]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전문보기]

#### 1. 지방세기본법

- (1)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 (§50③·④)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 통지 의무화
- (2)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62①)
  -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 (3)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62③)
  - 경정·불복 청구 등의 절차 없이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 \*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 2. 지방세법

- (1)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10, §10의 2~10의 6 신설)
  - (유상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에서 개인·법인 차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제거래가액)"으로 규정
  - (무상취득)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규정
    - \*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
  - (시행시기)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 '23년부터 시행 예정

|              | 현행                      | 개정안      |                     |
|--------------|-------------------------|----------|---------------------|
| 취득원인 구분없이 규정 | ✓ (개인) MAX(신고가액, 시가표준액) | 유상·원시 취득 | ✓ (개인·법인) 사실상의 취득가격 |
|              | ✓ (법인) 사실상의 취득가격        |          |                     |
|              | ✓ (개인·법인)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     | ✓ (개인·법인) 시가인정액     |

- (2) 증여 등 무상취득시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 (§20①)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과 연관된 규정으로 당해 규정과 동시 시행('23년부터 시행 예정)

**(3)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 (§21③ 신설)**

- 무상취득 및 법인 합병·분할 등의 과세표준 특례규정(개정안 §10의 3, §10의 5②)에 따라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시가인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시가인정액과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 또는 직권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제외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101①, §103의 28①)**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5) 토지 양도시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103의 3①, §103의 31①)**

- 단기보유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강화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개인지방소득세<br>(단기보유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미만: 5%(주택, 입주권·분양권은 7%)</li> <li>✓ 1년 이상 2년 미만: 4%(주택, 입주권·분양권은 6%)</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미만: 7%</li> <li>✓ 1년 이상 2년 미만: 6%</li> </ul>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br>(비사업용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의 1% 추가 납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소득의 2% 추가 납부</li> </ul>                       |

**(6)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103의 31⑥ 신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비과세

**(7) 국세 환급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등 (§103의 59①·②·③, §103의 59④ 신설)**

- 소득세·법인세 환급 통보 시 (개인·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의무화
-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다시 기산하도록 규정

**(8)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상한율 상향 조정 (§122)**

-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정상화

| 구분      | 세부담 상한율(%)*  |  |
|---------|--|--|
|         | 현행   | 개정안  |
| 법인 보유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가격 등 3억 이하: 105%</li> <li>✓ 공시가격 등 3억~6억: 110%</li> <li>✓ 공시가격 등 6억 초과: 13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li> </ul> |

\* 토지·건축물은 가격 관계없이 150%

3.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방세 특례 원칙상 일몰주기 규정 신설 (§2 의 2② 신설)

- 지방세 특례를 정하는 경우 해당 특례의 적용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야 함을 법제화

(2)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22⑥, §27②, §30②, §37, §38 ①·④, §38 의 2, §40 의 3, §41⑦)

- 의료기관의 의료사업(고유업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21.12.31. → '24.12.31.)
- 감염병 전문병원\*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취득세·재산세 10%p ↑)
- \*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복지부 장관(또는 질병청장)이 지정

| 구분                   |  | 현행   | 개정안   |
|----------------------|--|--|---|
| 공공<br>보건<br>의료<br>기관 | 지방의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75%</li> <li>✓ 재산세(5년) 75%</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 연장(3년)</li> <li>✓ 감염병 전문병원 10%p ↑ **</li> </ul> |
|                      | 지방의료원 외 공<br>공보건의료기관(국<br>립대병원, 국립암<br>센터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50%</li> <li>✓ 재산세(5년) 50%</li> </ul> |   |
| 의료법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세 30%</li> <li>✓ 재산세(5년) 50%</li> </ul> |  |   |

\*\* (감염병 전문병원) 코로나 19 등 감염병 연구·예방, 교육 및 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고려, 현행 대비 10%p 높은 감면을 적용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감면조문 정비 (§31⑥, §32①)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확대 및 취득세 감면을 조정(§31⑥)
  -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대상 추가) 신축주택 및 멸실목적 주택·근린시설·숙박시설 등
  - (취득세 감면을 조정) 50% → 25%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소규모 공동주택(60 m<sup>2</sup> 이하)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조정(§32①)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조정) 50% → 25%

(4)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 신설 및 연장 (§46①)

-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15%p 추가 감면(현행 취득세·재산세 35% 감면)

(5)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감면 제외대상 확대 (§47 의 4①)

-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을 '승계취득(유·무상 모든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제외
  - \* (현행)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을 '양도받은(유상취득) 자'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제외

(6)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 조정 등 (§57 의 2)

- 적격분할 등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취득세 감면요건 축소(§57 의 2③ 2.~5.)
  - (현행) 적격분할, 현물출자, 자산교환, 중소기업 간 통합
  - (개정) 적격분할, 현물출자, 중소기업 간 통합\*
  - \*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재산은 제외
-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감면(등록면허세 50% 감면)대상 확대(§57 의 2⑥)

- (현행) 과잉공급업종기업
- (개정) 과잉공급업종기업, 신산업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기업

**(7)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 매각한 중소기업이 재매입 시 감면 신설 (§57 의 3④ 신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

**(8)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명확화 (§78 ④·⑦)**

- 공장용 건축물 외 산업용 건축물등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대상 명확화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감면대상 | ✓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u>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포함</u> ) | ✓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 <u>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u> ) |

**(9)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요건 정비 등 (§79, §80①)**

-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및 공장을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요건 정비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법인 지방이전 감면 요건 | ✓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 → 대도시 외 이전 | ✓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
| 공장 지방이전 감면 요건 | ✓ 대도시 → 대도시 외 이전           | ✓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

**(10)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감면 신설 (§167 의 5 신설)**

- 지방이전 법인,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50%(100만원 한도) 감면

**(11)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 조정 (§177 의 2①2.)**

- 금융기관 등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한 재산(§57 의 3①)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

\* 장애인, 한센인, 국가유공자 등 담세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한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예외적으로 배제

-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74①)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전문보기]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21.8.13.~9.23.),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주요 개정내용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 규정 등임.

[판례]

구 지방세기본법 제 2 조 제 1 항 제 34 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납세자승)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 두 49324 판결(파기환송)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株式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대법원2007두10297, 대법원2012두12495 참조).

본 사안에서, 소외1이 원고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사이에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의 경영지배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소외1 등은 원고의 임원인 소외2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므로 소외2와 생계를 함께한다면 '원고의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고, 소외1 등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원고도 소외1 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는 바, 원고가 소외1 등으로부터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1 등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함.

[TKC 코멘트]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20누33673 판결, 이하 "원심판결")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본인'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를 통

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본인과 법인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이 사건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구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경영지배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시하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그대로 수긍함.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 조 제 9 호의 2 (가)목의 무효 여부 (국승)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 두 39655 판결

-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데,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전제로서 그 소득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고 그 소득이 원래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가 익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인 이상, 수범자는 제3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에 이와 같이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에는 제1항이 정한 익금 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채권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근거 규정인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심판례]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일반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시설투자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취소)

조심 2020 인 2139, 2021. 7. 12.

- 청구법인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내에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에는 중소기업으로 설립되었고 본점 사업장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투자내역은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로 이 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는 조특법 제24조에 정하는 투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사실에서 설립 당시부터 일반기업이었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취급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설립 당시 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체투자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설립당시 중소기업으로 이미 세액공제가 허용되었던 청구법인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로 일반기업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대체투자로 인해 새롭게 과밀을 유발할 요인은 없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률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조특법 제130조 제2항의 문언해석상 감면배제에 있어 중소기업 또는 일반기업의 판단은 고정자산 취득시점이 아닌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4년에 대체투자로 취득한 고정자산 관련 쟁점금액에 대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TKC 코멘트]

유사사례: 구 조특법 제63조 제1항(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있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1.6.).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1 서 2236, 2021. 7. 27.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조심2021중209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기대출 관련 형사소송 기록 등을 참고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이를 직권취소하였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토대로 구체적인 결손금 발생원인과 규모를 직접 확인하여 쟁점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고지된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로, 청구법인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지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직접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TKC 코멘트]

-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확정된 내용에 공신력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로서의 유효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617, 2021.02.09.).
-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20두34889, 2020.05.28.).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기각)**

조심 2021 서 2233, 2021. 7. 28.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가공자산에 불과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할지라도 동 이자가 실제로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인정이자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별다른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인정자금을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이를 1년 뒤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한 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대여와 상환을 반복하면서 가지급금 증감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대표자도 이에 대하여 수 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미수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미수이자 아닌 가지급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쟁점인정자금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전환은 실질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채무면제이익 등 손익이 인식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1 중 1718, 2021. 8. 2.

- 차입거래가 먼저 발생한 후 그 차입금을 전제로 증자(쟁점전환)한 이상, 처음부터 증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차입금의 출자전환에 대하여 채무자가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그 초과액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가 차입금의 상환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차입금보다 낮다면 그 차익



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자금조달)은 출자전환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불리한 부분(익금인식)에서만 실질에 따라 일반증자(자본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안정성 등을 저해하므로 합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전환 과정에서 채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채권자인 모법인에게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청구법인과 모법인의 관계(100% 출자관계)를 감안하여 순자산 전체의 변동효과를 살펴보더라도 그 실질 또한 달라질 것이 없는 이상 채무자 입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법인세법」이 명문상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실질과세를 이유로 익금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모법인에게 발생한 회계적 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을 처분청이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

### 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020-심사-1474, 2021. 8. 19.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복 지원 배제 원칙은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점, 이전세액감면액은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에 본사 근무인원 비율 등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해당 소득금액 산정 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이유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AA 본부 등 5개 사업소의 소득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전세액감면이 적용될 경우 사업소의 투자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소의 소득 일부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받게 되어 중복지원 배제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용도나 발생원천 등이 명백히 구분되어 인식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한 것을 구분경리라고 하는데 청구인과 같이 법인의 익금·손금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회계처리한 전체 소득에 대해 본사 근무 인원과 사업소 근무 인원 비율로 단순 안분 계산한 것을 구분경리라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예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수출대금을 국외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 2021. 5. 27.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1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 21 조 제 2 항 제 2 호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화 반입 시 세관 신고 내용, 외국환은행에서의 환전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등록하기 전에 임대료를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6 조의 3 제 3 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30, 2021. 6. 17.

-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6 조의 3 제 3 항에 따른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인하여 지급받은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96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에 해당하는 것임.

[TKC 코멘트]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 96 조의 3 제 1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 2021.01.21.).

**부동산임대업과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20년 쟁점기계장치 투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법인-3474, 2021. 7. 5.

- 「조세특례제한법」 제 24 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 조 제 2 항 제 4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 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

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임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기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약 2년간(쟁점 공사기간)에 걸쳐 임대용 건물(쟁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법인의 '쟁점 건축물' 건축을 위한 '쟁점 공사기간'이 합병에 따른 감면요건 중 하나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604, 2021. 7. 7.

- 취득세 감면요건의 하나는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인데, '쟁점 건축물' 공사기간 중에도 당해 법인의 임직원 고용을 유지한 점, 계속하여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이행하여 온 점, 기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쟁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당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은 합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사료됨.

**같은 날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되고 이후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부동산세제과-2064, 2021. 7. 29.

-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는데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법적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Knowledge Center  
[kr-fmtaxtkc@kr.kpmg.com](mailto:kr-fmtaxtkc@kr.kpmg.com)